

간염여	방·관리치	레계 -	구축	민	유영

관리번호	W-10.1.1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QI실	검토주기	3년
관련근거	의료기관인증기준 10.1.1	검토예정일	2019년 10월 30일

# 1 . 목적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난이도에 적합한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다.

## Ⅱ. 규정

- 1. 현행 과학적 지식의 기반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2. 세부사항은 [감염관리지침서]를 참고한다.

# Ⅲ. 절차

- 1.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43조 및 별표 8의2)
  - 1) 의료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 효율적인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은 정부 및 관련학회/ 단체의 관리지침,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작성한다.
    - (3)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수행한다.
  - 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활동
    - (1) 의료관련감염의 예방대책을 심의하고 감염관리 기준을 확립하여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증을 예방하며,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일반인과 직원의 보건에 기여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감염관리위원회 활동>

- ①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심의
- ②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③ 의료관련 감염예방, 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④ 감염관리요원의 선정과 배치에 관한 사항
- ⑤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⑥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항 사항 심의
- ⑦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⑧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사항 심의
- ⑨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⑩ 의료기관 내. 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심의
- ⑪ 그 밖에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감염관리실 활동>

- ①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 ②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③ 직원의 감염관리교육과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 (1) 의료관련감염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재를 실시한다.
  - (2) 연간계획 수립, 시행, 평가는 매년 작성하여 감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4) 감염위험평가를 포함한 감염발생 감시 프로그램 운영

감염발생 감시 활동은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감염감시 항목은 매년 연간 계획 수립 시 재조정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5) 유행발생(Outbreak)시 관리체계 [별첨 1]

원내 감염성 질환의 유행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와 중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6) 감염관리 실적분석 및 평가 [별첨 2]
  - (1) 의료기구 관련 감염률과 손위생 수행률은 최소 분기별로 평가하여 해당부서에게 송부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2) 그 외 감염관리 실적은 년 1회 통계와 분석을 시행하여 내부결재와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활동 여부, 개선활동 결과를 평가한다.
- 7) 감염관리 관련 교육
  - (1)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 위탁서비스 및 입점업체, 실습학생들에게 감염관리의 기본개념과 실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원내 윌스공지사항 또는 공람/회람/직원게시판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한다.
  - (3) 환자, 보호자(간병인 포함) 및 방문객에게 감염관련 교육(홍보)를 시행한다.
- 8) 감염과 관련된 직원 건강관리 [W-1.2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 감염환자의 관리 [별첨 3]
  - (1) 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신고 및 격리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 (2) 법정감염병 발생신고서를 보건소에 팩스 신고한다.
  - (3)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격리절차에 따라 격리를 진행한다.
- 10) 부서별 감염관리

각 부서별( 6·7병동, 외래, 내시경실, 수술실, 운동재활치료실, 비수술센터, 임상병리실, 영 상의학과, 조리장) 특성을 고려한 부서별 감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감염관리를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 11)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 (1) 호흡기치료기구 관련 폐렴예방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2) 유치(인공)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3) 혈관 카테터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12) 세척, 소독 및 멸균관정에 대한 감염관리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으로 분류하고 적적한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시행한다.

- 13)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환경(청결, 소독 등) 관리
  - (1) 1회/월 환경감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부서별 환경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 (2) 정기적인 부서 미생물 배양검사를 시행한다.(분기별)
  - (3) 정기 배양검사 대상부서 : 내시경실, 병동 매 관찰실, 수술실, 약제실, 진단검사의학팀, 원내 정수기
  - (4) 원내 소독제 사용지침을 따르며, 사용량을 1회/년 모니터링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 14) 건물 신축, 보수 시 감염위험도 평가 및 감염예방관리

감염위험도 평가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절차 방법 : 공사현장 안전점검표, 병원시설 개보수 공사 시 감염관리 점검표, 공사구역감 염관리 모니터링 점검표

- 15) 의료기관 내·외부 정보 공유
  - (1) 손위생 수행률과 의료기구 관련 감염률은 분기별로 평가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감염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2) 그 외 감염관리 성과는 년 1회 통계를 산출하여 내부결재와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3)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활동을 시행하고, 활동내용과 결과에 대한 관련부서와 공유한다.
- 2.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의료법시행규칙43~4조)
  - 1) 위원회 구성 : 구성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병원장
    - (2) 구성원 : 감염관련의사, 간호과장, 진료지원과장, 상담실장, 각 병동 수간호사, 임상병리실장, 감염관리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임.
  - 2) 위원의 임기: 해당 부서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상기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감염관리위원회의 활동)
  - 4) 위원회 정기적 운영
    -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감염관리 실무회의 포함)로 운영
    - (2)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
  - 5) 위원회 운영 결과의 경영진 보고
    - (1) 회의록 작성하여 병원장 결재를 득하고 감염관리실 비치
    - (2)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에게는 메일 송부
  - 6) 위원회 결정 사항의 직원 공유

윌스공지사항를 통한 전산공유, 공람/회람/직원게시판을 통한 서면공유

- 3. 감염관리실 설치하고 감염업무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
  - 1)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상기 감염관리 규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감염관리실의 활동)
  - 2) 감염관리 실무직원 :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가 실무를 전담한다.
- 4. 적격한 감염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관련 별표 8의2 참조)
  - 1) 실무수행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직무기술서 참조)



- (1) 감염관리 담당인력 자격 : 면허, 경력, 교육이수
- (2) 직무의 범위 및 핵심성과지표
- (3) 직무에 대한 성과평가
- 2)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감염관리 담당직원 배치

직종	근무 또는 자격요건	교육 이수	
	주 3일 이상 & 주 20시간 이상 감염		
의사	관리실 업무만 수행		
	(환자 진료 업무와 구분되어야 함)	   감염관리교육 16시간	
   간호사	감염관리 경력이 연속하여 3년 이상	이상 이수(연간)	
신호시	또는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VIO VII(LLL)	
기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관리 경력이 연속하여 3년 이상		
인정하는 자	삼옵션다 성력이 선축하여 3년 이성 		

- 3) 감염관리 전문교육과 훈련
  - (1) 감염관리팀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법 시행규칙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에 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첨 1]
  - (2) 정보와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을 위한 훈련
  - (3) 감염관리실 근무자는 정보와 데이터의 관리·분석·활용을 위한 훈련을 받도록 한다.

# IV. 참고

- 1. 의료법 제43조 ~ 제46조 <개정 2016.10.6.>
- 2.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한미의학, 2011.
- 3.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학. 현문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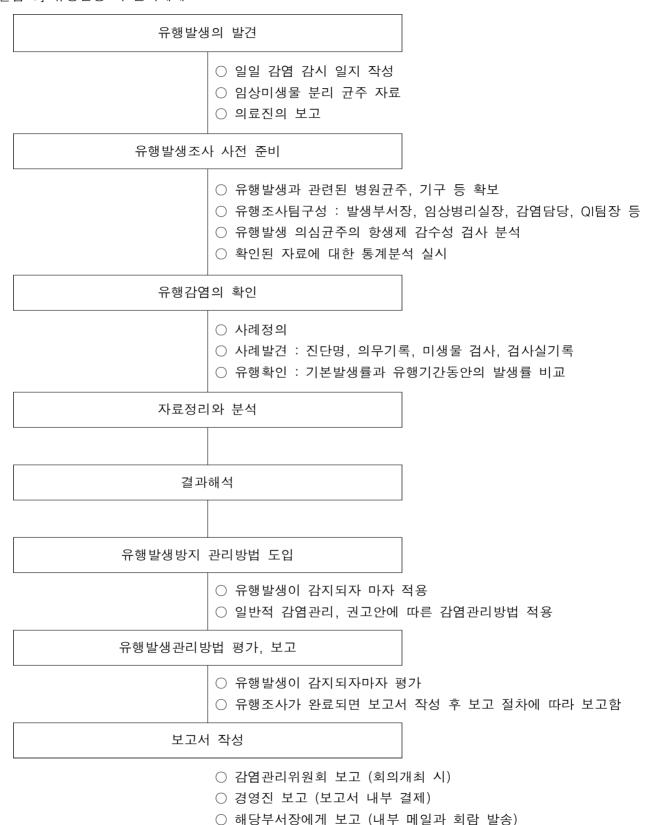
# [별첨]

- 별첨 1. 유행발생 시 관리체계
- 별첨 2. 감염관리 실적분석과 평가 절차
- 별첨 3. 감염병 감염환자의 관리
- 별첨 4.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 기준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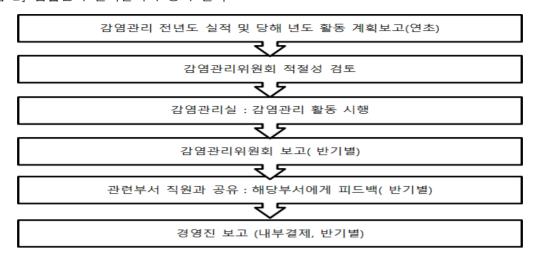


#### [별첨 1] 유행발생 시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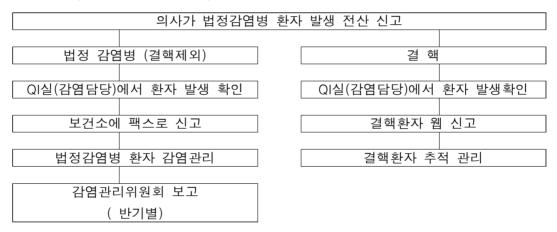


[별첨 2] 감염관리 실적분석과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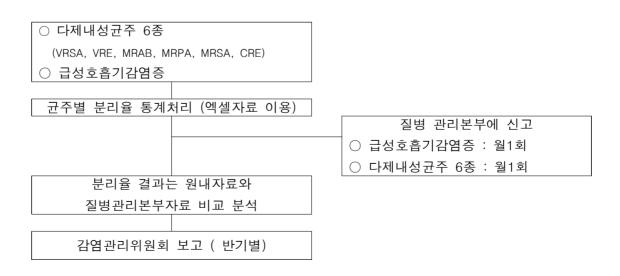


[별첨 3] 감염병 감염환자의 관리

① 법정감염병(의료관련감염증 제외)



② 의료관련감염병





### [별첨 4]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 기준

- 1.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 2. 교육 기관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4)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3. <u>교육 내용</u>: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역학통계
- ※ 비고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 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